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12. 12 선고 2023가단2015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단체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11. 21.

판 결 선 고 2023. 12. 1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22. 7. 18. 체결된 합의해제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22. 7. 19. 접수 제8733호로 말소등기 된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7. 6. 6. 접수 제21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1. 17. C와 신용보증한도액 190,000,000원, 대출금액 200,000,000원, 신용보증거래기간 2019. 1. 17.부터 2029. 1. 1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D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원고는 2023. 3. 24. C를 대신하여 D조합에 194,808,3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4/5 지분을 아들인 E에게, 나머지 1/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E의 배우자인 C에게 증여하였고, E과 C는 2017. 3.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22. 7. 18. C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 약정’이라 한다), C는 2022. 7. 19.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합의해제 약정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는바,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해제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해제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해제 약정 당시 이미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합의해제 약정일로부터 약 8개월 후 원고는 C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해제 약정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해제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그리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75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합의해제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준

별지